



【검토보고서】

2018.10.11(목)
제298회 임시회

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



양주시의회
Yangju City Council

【전문위원 김유연】

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과

가. 제안자 : 양주시장(복지지원과장)

나. 제출일 : 2018년 10월 4일

2. 제안이유

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교육·직업·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전문 사회복지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시설 및 주요사업개요

- 시설명 :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(부설 주간보호시설 포함)
- 위치 : 양주시 삼송동 640-30번지 (삼송동 종합사회복지타운 내)
- 시설규모 : 1개동 지상 2층(부지면적 6,976㎡, 건축연면적 2,999.62㎡)
- 운영시기 : 2019년 3월
- 소요인력 : 30명(복지관 25명, 주간보호시설 5명)
 - 관장, 사무국장, 일반직, 기능직 및 부설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포함
- 운영비 : 1,520백만원 (2019년도 본예산 반영 예정)
 - 장애인종합복지관 : 1,300백만원(인건비 1,100백만원, 관리운영비 200백만원)
 - 부설 주간보호시설 : 220백만원(인건비 210천원, 관리운영비 10백만원)

○ 주요시설

- 1층 : 물리치료실, 의무실, 체력단련실, 주간보호시설, 다목적실, 강당 등
- 2층 : 치료실(언어·음악·인지 등), 특수체육실, 훈련교육실, 사무실, 식당 등

4. 위탁계획

○ 위탁기간 : 위탁일로부터 5년

○ 위탁기관 모집 방법 : 공개모집 공고를 통한 선정

○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

- 경기도, 서울특별시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,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수행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 상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
- 법인 정관상 장애인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한 법인
-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금 지원 외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며, 위탁 신청 시 수탁기간 동안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전문사회복지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
- 『사회복지사업법』 및 『장애인복지법』, 관련 법령, 각종 지침, 「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, 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

○ 운영기관 선정방법 :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·선정

- 위원회 구성 : 9명 (위원장 :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)
 - ▶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
 - ▶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▶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- ▶ 그 밖의 법률 전문가 등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5. 향후 추진계획

- 2018. 9 ~ 10월 : 시 의회 위탁 동의안 제출 및 의결
- 2018. 10 ~ 12월 : 위·수탁법인 선정 공고 및 심의·선정, 협약 체결
- 2018. 12월 : 장애인종합복지관 공사 완공
- 2018. 2월 : 의료기기 및 집기류 등 설치
- 2019. 3월 :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및 운영

6. 검토의견

가. 안건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에 따라 건립중인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「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

[사회복지사업법]

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「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나. 시설개요

구 분	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	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(부설)
운영시기	2019년 3월	
위 치	양주시 삼승로 129번길 199-13	
시설규모	연면적 2,999.62㎡(지상2층)	종합복지관 1층 내
소요인력	25명 (관장1, 사무국장 1, 팀장 6, 팀원 14, 기능직 2, 고용직 1)	5명 (팀장1, 사회재활교사 3, 기능직 1)
주요사업	상담·사례관리, 특수교육 등	재활치료, 교육지도, 취미생활 지원 등
사 업 비	1,300백만원 (인건비 1,100 / 운영비 200)	220백만원 (인건비 210 / 운영비 10)

다. 위탁추진계획

- 위탁기간 : 위탁일로부터 5년
- 모집 방법 : 공개모집
-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
 - 지역제한 : 경기도, 서울특별시
 - 주요사업 : 장애인 복지관련 시설
 - 재정부담 : 연간 5천만원 이상 부담 가능한 법인
- 운영기관 선정방법 :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선정

[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]

- ▶ 인 원 : 9명
 - 위 원 장 :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
 - 양주시의회에 추천한 의원 2명
 -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- 그 밖의 법률 관련 전문가 등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라. 재정소요

○ 인건비

(단위: 천원)

시설명	구분	명	호봉	월기본급	연간총인건비계
총계		30			1,302,651
장애인종합복지관	관장	1	20	4,336	77,637
	사무국장	1	15	3,746	67,227
	일반직(팀장)	6	12	3,057	330,425
	일반직(팀원)	15	7	2,136	549,961
	기능직(운전원)3급	1	5	1,881	34,322
	고용직(조리원)4급	1	3	1,688	30,917
계		25			1,090,489
주간보호시설	시설장	1	15	3,988	71,497
	사회재활교사	3	7	2,336	108,636
	기능직	1	3	1,751	32,029
계		5			212,162

※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
(가족수당 및 시간 외 근무수당 포함금액)

○ 운영비

- 장애인 종합복지관 : 수용비, 시설장비유지비, 사업운영비 등 200백만원

※ 경기도 내 동일규모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운영비 참고

- 주간보호시설 : 10백만원

※ 보건복지부 시설관리비 및 재활사업비 : 15,330천원(시설 관리비 제외)

마. 검토의견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「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건립중인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
-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민간위탁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는 한편, 위탁되는 사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이를 담당토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과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운영방식으로
- 경기도 내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 시설의 대부분은 민간법인에 위탁하고 있어 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.
- 위탁추진계획상으로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상 명시되어 있는 위탁기간(5년), 모집방법(공개모집), 위탁기준 등에 법적위배사항은 없음
- 다만,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, 위·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재정능력,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수탁자 선정절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
- 또한, 민간위탁으로 인해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·감독과 더불어 종합적인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할 것임.

[장애인등록현황]

구분	2018. 8.	2017. 12.	2016. 12.	2015. 12.
양주시 인구수(명)	214,436	212,146	205,513	205,184
장애인등록수(명)	11,466	11,220	10,618	10,529
장애인등록비율(%)	5.4	5.3	5.1	5.1

[관계법령]

[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]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

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**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**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■ 참고자료 :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현황 및 조직도

[시설현황]

구분	층별 현황	비고
2층	언어·인지·작업·음악치료실, 프로그램실, 특수체육실, 다목적실, 부모대기실 및 수유실, 훈련교육실, 관장실, 통합사무실, 식당	24실
1층	성인물리치료실, 소아물리치료실, 다목적실, 체력단련실, 강당, 카페테리아, 의무실, 자원봉사자실, 안내실, 훈련교육실, 소그룹지도실, 평가실, 주간보호시설(사무실, 활동실 등 포함)	26실

[조직도]

